

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4. 9. 30.>

보양온천 지정기준 (제2조제2항 관련)

대항목	중항목	소항목	지정기준	지정조건	비고
온천수	온도	온도	용출온도 35℃ 이상		소항목 중 온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소항목 중 총고용물, 유황, 유리탄산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
	성분	총고용물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/ℓ 이상		
		유황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유황(H_2S , S_2O_3 , HS^-) 함량 1mg 이상		
		유리탄산	용출온도 25℃ 이상 유리탄산 250mg/ℓ 이상		
	수량	이용허가수량	1일 최대이용 인원(840명)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	- 최소 210m³/일 이상 - 운동욕장 50m³/일 이상 - 온천욕장 160m³/일 이상	절대조건
보양온천시설	시설	건강시설 (총연면적 1,000m ² 이상)	1.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. 운동욕장(5가지 기능) 가. 보행욕 나. 전신샤워(Body Shower: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, 허리,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) 다. 수압마사지(Neck Shower: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목,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) 라. 욕조 안마(Floating Massage: 낮은 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) 마. 수중침대(Relax Lining: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, 허리, 종아리,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) 3. 운동실 4. 릴렉스 존 5. 수영장	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- 욕조바닥 면적 100m² 이상 -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	절대조건
		기본시설	1. 프런트 로비 2. 탈의실 3. 온천욕장 4. 사우나실 5. 찜질방 6. 노천탕	5종 이상 운동기구 - 수면실 외 교류 장소 - 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m² 이상 -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	

			7. 다목적 홀 8. 식당		
		부대 시설	1.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 리 (1,000미터 이내)에 이용 가능 2.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 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		
		필수 사항	1. 야외공기 청정도 2. 실내공기 청정도 3. 실내 소음도	•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환경기준 •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•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 표 8의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	절대조건
보양 온천 환경	주변 환경	권장 사항	1. 경관이 수려 2. 녹지(공원) 등이 잘 정비 3.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.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. 상수도시설 상태 6.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. 재해에 대한 안전도 8.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		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으로 각각 분류하여 5개 이상의 항목이 우수인 경우